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: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

◇ 제 · 개정 이유: 가스누설경보기의 성능 안전성 향상을 위한 시험기준 신설 및 강화 등 기술기준을 개선 · 보완하려는 것임

◇ 주요내용

가. 열변형 온도 강화 및 UL-94시험 신설 (제4조제2호)

나. 색상 표시로 전원공급 상태 확인 및 정확한 상태 파악 가능한 전원표시 신설 (제4조제4호 및 제21호마목)

다. 전선당김 시험 신설(제4조제22호)

라. 전자계전기 사용 가능 제품 신설(제8조제3호마목)

마. 새로운 회선의 주음향 장치를 올리도록 기준 강화(제11조제3호)

바. 수신부 주위온도 및 탐지부 온도시험 강화(제13조, 제21조)

사. 건설현장발생가스 추가(제16조)

아. 전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원전압 변동시험 강화(제18조)

자. 습도시험 강화(제22조)

차. 가스누설경보기 표시사항 개선(제30조제4항)

카. 살수시험 강화 및 표시내구성시험 신설(제29조, 제30조의2)